

특약 개정 대비표

- 1. 약관명: 『희망저축계좌Ⅱ』 특약
- 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 1조 ~ 제 8조 <생 략> 제 9조 우대금리 <생 략> <u>(주1) 급여입금 인정 기준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,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(급여, 월급, 연봉, 봉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bonus 등)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</u> <생 략> 제 10조 ~ 제 13조 <생 략> 부칙 <u><신 설></u>	제 1조 ~ 제 8조 <좌 동> 제 9조 우대금리 <좌 동> <u>(주1) 급여 인정 기준</u> <u>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u> <u>②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③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 <u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</u> <u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 <좌 동> 제 10조 ~ 제 13조 <좌 동> 부칙 <u>1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u>	급여인정 기준확대 부칙추가